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35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 염태영 · 김남희 · 박홍근

김문수 · 황정아 · 김용만

이기헌 • 박정현 • 박주민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2조(「교통안전법」의 개정)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를 "제41조제1호"로 한다.

제3조(「궤도운송법」의 개정)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한다.

제4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제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 를 "제1호"로 한다.

제68조의16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주차장법」의 개정)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를 "제19조의15제1호"로 한다.

제10조(「철도사업법」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를 "제1호가목"로 한다.

제11조(「철도안전법」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26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의8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38조의10제1항제4호 중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를 "제38조의8 제1호"로 한다.

제1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4조(「항공사업법」의 개정)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4조제1호"로 한다.

제51조의5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	
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5
면허가 취소(이 조 <u>제1호 또</u>	<u>제1호</u>
<u>는 제2호</u> 에 해당하여 운송사	
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그 취소일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통안전법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4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	
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5
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u>제41조제1호</u>	<u>제41</u> 조제 <u>1호</u> -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궤도운송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	
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	3
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다만, <u>제1호 또는 제</u>	<u>제1호</u>
<u>2호</u> 에 해당하여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	
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1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지 아니한 사람</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도시철도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결격사유) ① 임원 중에	제2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도	
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	2
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u>제</u>	<u>제</u>
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	
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	3
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u>가. 피성년후견인</u>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u> 니한 자</u>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	
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삭 제></u>
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5
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	
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মা1ই</u>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격사유)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	

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생 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 6. (생 략)
- ②・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제54조(결격사유)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u>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	3
업의 등록이 취소(<u>제1호 및</u>	<u>মী1ই</u>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결격사유)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주차장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9조의15(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5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u>제19</u> 조의15제1호 및 제	<u>제19</u> 조의15제1호
<u>2호</u>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철도사업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7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	
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지 아니한 사람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	2
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	
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	<u>제1호가목</u>
<u>는 나목</u> 에 해당하여 철도사업	
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	
외한다.	

철도안전법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26조의4(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8조의8(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	
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	3
의 인증이 취소(제38조의10제	
1항제4호에 따라 <u>제1호 및 제</u>	<u>শ্বী1ই</u>
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u>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u>에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생략)
- ② (생략)

4
4.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
<u>.</u>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8조의8제1호</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44조의4(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	
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u>피한정후견인</u>	1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	
<u> </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항공사업법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	
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	
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5
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u>제4조제1호</u>
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	
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_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격 사유)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 사람</u>
- 3. ~ 6. (생략)
- ②・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